조 사 보 고 서

2020년 부천시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부천시
Fantasia 판타지아 부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 목 차 >

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내용 ····· 3
1) 연구 목적 ····· 3
2) 주요 조사 내용 ····· 3
3. 조사·연구 방법 ····· 4
4. 단시간 노동의 쟁점 ····· 5
1)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배제 ····· 5
2)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단시간 노동 ····· 6

2장 설문조사 결과 ····· 7
1.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 7
2. 단시간 노동자 실태 ····· 7
1) 근무일 및 근무시간 ····· 7
2) 근로계약 ····· 9
3) 임금 ····· 10
4) 인격적 대우 ····· 16
5) 기타 근로관계 ····· 18
6) 사회보험 ····· 22
3. 편의점 사업주 설문조사 ····· 24
1) 편의점 점주 설문조사 개요 ····· 24
2) 가맹점 운영 실태 ····· 25

3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35

1장 서론

1. 연구 배경

○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이 한국의 노동사회에서 최대의 해결 과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로 기간제·무기계약직 등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용역·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되어 왔다.

○ 반면에 상대적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고용형태로서,
-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비정규 고용형태였다.
- 전체 임금노동자중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3년 80만 6천명 수준이었던 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2019. 8월 기준으로 315만 6천여명 수준으로 증가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1/3은 단시간 노동자이다.

[그림 1-2] 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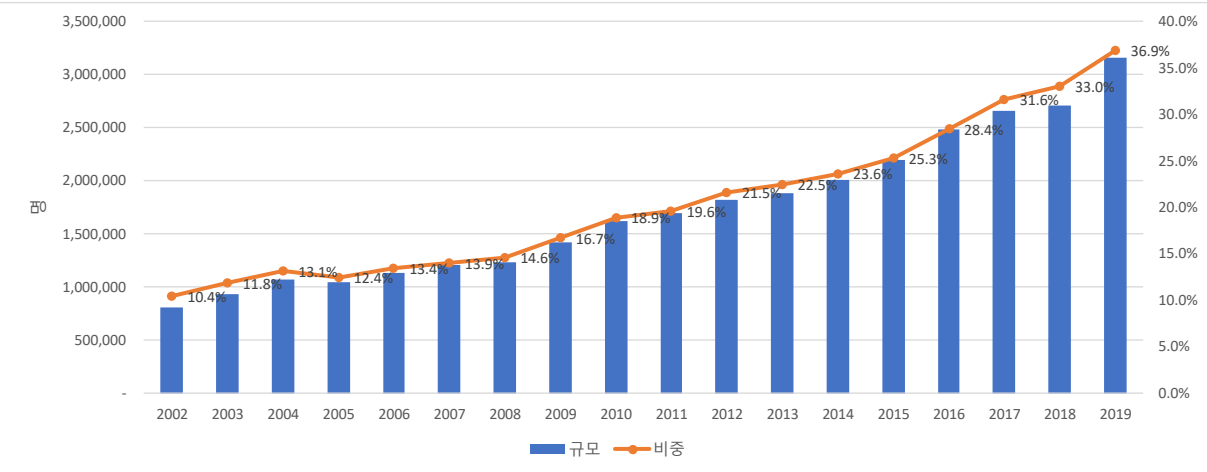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율은 전체 비정규 노동자 대비 비율치임.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단시간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단시간 노동에는 대체로 여성, 청소년 및 준고령 노동자 등 대체로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 단시간 노동자들은 부업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노동시장 취약집단별로 직종·업종이 분리되어 분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중·고교와 대학생들이 단시간으로 취업하는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종·직종들은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체라는 점에서 사업주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기본권 유린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 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정된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하고,
>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 다.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꺾기'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라.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며,
> 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에 관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교육을 명문화하여 이를 실시하고,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 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상시 게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한다.
>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
> 2010. 2. 4

-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의 비정규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내 단시간 노동자, 특히 급증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실태 파악과 처우 개선 방안에 경주해 왔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인 '힘내라 알바'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 그럼에도 단시간 노동자의 처우와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시간

1) 조돈문외 (2016),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특히 청소년의 단시간 노동은 ‘부업’이나 ‘알바’란 이름으로 평가 절하되거나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편이다.

- 단시간 노동자인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는 이상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 보고서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단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부천시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2. 연구 목적·내용

1) 연구 목적

○ 부천시 관내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파악

- 임금, 근로조건 등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의 상당 수는 청소년, 여성, 준고령 등 노동시장내 취약 계층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 프랜차이즈 점주 실태조사

-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자영-고용주의 지위에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하에서는 종속성을 지닌 소규모 사업주이기도 하다.
- 이런 점에서 점주 실태조사를 통해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더불어 가맹본사와의 거래관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프랜차이즈 점주 및 노동자 조사를 통해 부천시 관내 프랜차이즈 업종내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상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처우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조사 내용

○ 가장 주요한 조사 내용은 단시간 노동 관련한 법·제도 준수 실태 파악이다.

-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과 더불어 기타 부당한 처우 경험 유무 등
- 임금 실태와 복리후생 적용 실태 : 시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 실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 작업장내 산업안전 : 성희롱 실태 등.

○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업종중 편의점 업종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편의점은 2000년대 이후 급증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종로서 프랜차이즈 업종중 가장 많은 사업체와 고용규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 프랜차이즈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프랜차이즈 업종	전국		경기도	
	사업체 수	종사자수	사업체 수	종사자수
체인화 편의점	41,359	179,096	10,536	47,714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1,688	4,571	459	1,255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3,632	12,173	928	3,268
안경 및 렌즈 소매업	3,184	9,008	687	2,049
한식 음식점업	29,209	123,697	7,602	33,158
외국식 음식점업	7,561	41,452	2,051	11,764
제과점업	7,354	34,989	1,832	9,095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576	55,678	2,834	15,208
치킨전문점	25,110	65,241	5,883	16,243
김밥, 기타 간이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	13,077	45,900	3,262	12,134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11,676	33,516	2,419	8,062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17,615	76,842	4,139	18,018
자동차 전문 수리업	7,038	26,895	1,625	6,914
두발 미용업	3,897	21,176	1,198	6,421
가정용 세탁업	4,575	8,490	1,382	2,738
기타 프랜차이즈	21,548	77,696	5,553	21,317
합계	210,099	816,420	52,390	215,358

* 통계청,「프랜차이즈조사」(2018년)

- 또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종은 단시간 노동자,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동자가 집중 취업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기도 하다.

3. 조사·연구 방법

○ 양적 조사

- 단시간 노동자, 점포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
  - ▪ 조사대상 : 부천시 관내 편의점 업종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사업주와 단시간 노동자

○ 문헌 조사

- 노동과 단시간 노동 전반에 대한 기존 문헌 및 자료를 활용한 실태와 쟁점 파악.

4. 단시간 노동의 쟁점

○ 프랜차이즈 업종을 포함한 한국 노동사회에서 단시간 노동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배제

○ 현재 한국의 노동법하에서는 주당 15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회보험, 노동복지, 고용안정성 등에서 차별 처우할 수 있도록 배제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 현행 법상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차와 연차, 기간제법상의 고용의제, 퇴직급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에서도 임의 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비단 초단시간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노동 전반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관행화되어 있다. 이런 점은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 더 두드러진다. 보조적 노동이라는 인식과 차별적인 연령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 노동자에게 투여된 결과이다.

○ 그에 따라 근로시간 비례라는 원칙하에 이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동등 처우의 원칙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 제 175호(단시간노동 협약)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임신·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비례원칙이 아닌 통상의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ILO 협약 제 175호),

○ 유럽연합(EU)도 파트타임 노동 지침(directive)을 통해 파트타임 노동자는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고용조건과 관련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시간비례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 파트타임 노동을 이유로 비교가능한 풀타임노동자보다 불리한 방식으로 취급받아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회원국은 파트타임 노동 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장애물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또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의 전환

을 노동자가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종료는 국내법 등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 하에서 노동시간 비례 균등 대우 원칙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며, 취약계층이 집중 취업하기에 단시간 노동에 대한 남용이 일반화되어 왔다.

2)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단시간 노동

○ 한국 노동사회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315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1-1] 참조).

- 단시간 노동에 대한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단시간 노동은 증가율이 가장 큰 비정규 고용형태이다(조돈문외, 2016).

○ 이러한 단시간 노동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중,고,대학생),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소득이 필요하지만 당장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 등이 집중적으로 취업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노동시장내 취약 계층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법상 허용된 차별처우에 더해 노동시장내 주변부·취약계층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인해 임금·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편이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서부터 최저임금 미만 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더해 고객에 의한 '갑질'에 따른 감정노동상의 어려움까지 고질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한국 노동사회에서 단시간 노동은 좋은 시간제가 아니라 나쁜 시간제 일자리 성격이 강한 편이다.

2장 설문조사 결과

1. 단시간 노동자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 부천시 편의점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부천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였다.
- 조사는 2020년 7월 ~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37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표 2-1] 설문조사 참여자 개관

구분		인원	비율(%)	구분		인원	비율(%)
성	남성	290	45.7	연령	20세미만	70	11.1
	여성	344	54.3		25세미만	314	49.6
근속	3개월이하	134	21.3		30세미만	122	19.3
	6개월이하	196	31.2		40세미만	36	5.7
	1년이하	288	45.8		50세미만	45	7.1
	1년초과	11	1.7		50세이상	46	7.3
	평균	6.3개월			평균	27.0세	
가맹 형태	프랜차이즈 가맹점	315	50.2				
	프랜차이즈 직영점	17	2.7				
	잘 모름	296	47.1				

- 성별에서는 여성이 약간 많은 편이며, 근속에서는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45.8%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근속기간은 6.3개월이다.
- 연령에서는 20세~25세미만이 전체의 1/2인 49.6%를 차지하고 있어,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20대 청년층이 집중 취업하는 업종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40세 이상의 중·장년층도 14.4%(91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 단시간 노동 일자리가 노동시장 경험 축적 차원에서 청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2. 단시간 노동자 실태

1)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조사 참여자의 주당 근무일 수와 주당 근로시간·야간 근로시간을 파악한 결과, 주당 평균

3.2일 동안 22.7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야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평균 야간 근무시간은 15.7시간이다.

[그림 2-1] 주당 근무일 수·시간 및 주당 야간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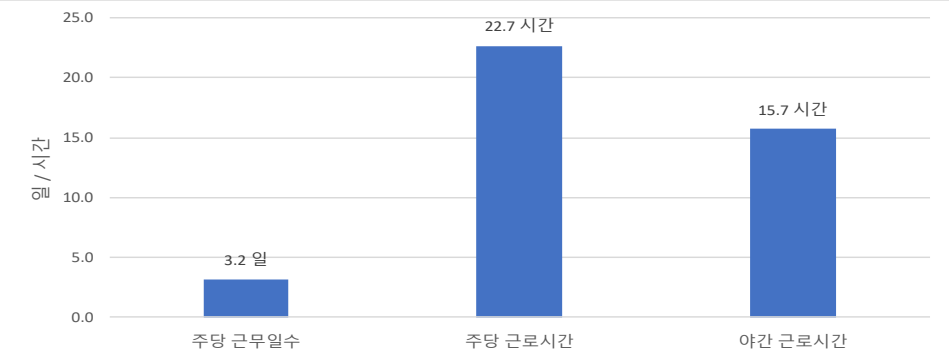

○ 주요 변수별로 근무일 수와 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반적으로 근무일 수와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이 긴 편이며,

[표 2-2] 세부 변수별 현황 (평균)

구 분		주당 근무일수	주당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성	남성	3.2	24.5	18.3
	여성	3.1	21.1	11.8
근속	3개월이하	3.3	25.1	16.0
	6개월이하	3.1	21.0	17.3
	1년이하	3.1	22.2	14.3
	1년초과	4.3	34.0	18.5
연령	20세미만	2.8	17.1	10.6
	25세미만	2.9	19.7	12.7
	30세미만	3.4	25.0	17.0
	40세미만	3.9	29.9	22.6
	50세미만	4.0	32.7	27.7
	50세이상	3.7	29.8	21.3

- 근속이 길수록, 그리고 40대에서 근무일 수와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40대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전업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 성별-연령별 주·야간 근무 형태를 보면, 남성은 주간·야간 근무를 혼합하거나 야간 근무만

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여성은 주간 근무만을 하는 비율이 높다.

- 연령별로 보면 25세 이상부터 야간 근무만을 하는 비율이 높다.

[표 2-3] 성별-연령별 근무 형태

구분		주간만	주야	야간만	소계
성	남성	103 (35.6%)	137 (47.4%)	49 (17.0%)	289 (100.0%)
	여성	221 (64.4%)	96 (28.0%)	26 (7.6%)	343 (100.0%)
연령	20세미만	33 (47.1%)	29 (41.4%)	8 (11.4%)	70 (100.0%)
	25세미만	172 (55.0%)	113 (36.1%)	28 (8.9%)	313 (100.0%)
	30세미만	56 (46.3%)	45 (37.2%)	20 (16.5%)	121 (100.0%)
	40세미만	16 (44.4%)	15 (41.7%)	5 (13.9%)	36 (100.0%)
	50세미만	24 (53.3%)	14 (31.1%)	7 (15.6%)	45 (100.0%)
	50세이상	22 (47.8%)	17 (37.0%)	7 (15.2%)	46 (100.0%)

2) 근로계약

○ 단시간 노동, 특히 청년층 단시간 노동에서 가장 주요한 법 위반 사항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이다.

-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특성과 더불어 자영업주인 프랜차이즈 점주의 낮은 노동인권 의식이 더해져 가장 흔히 발견되는 법 위반 사항이다.

[그림 2-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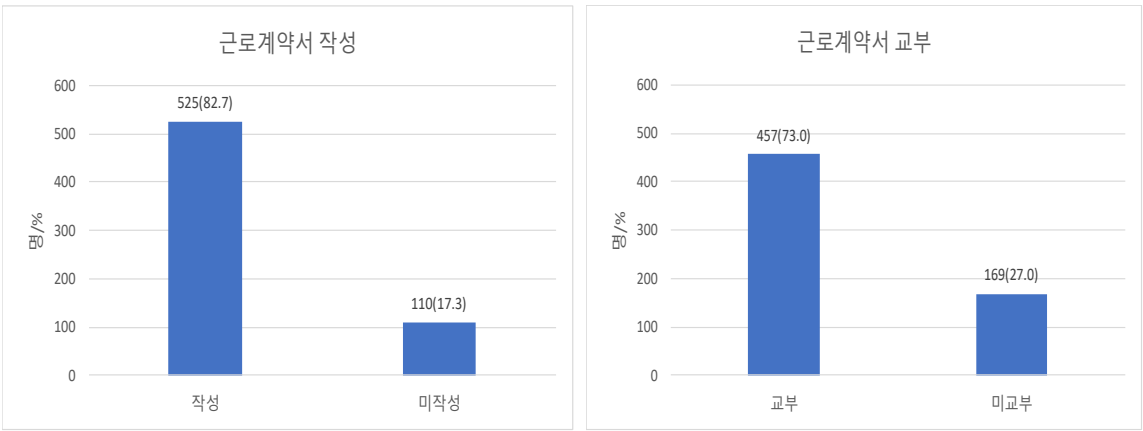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3%, 미교부 비율은 27.0%에 이르고 있다. 조사 참여자 10명중 3명 꼴로 자신의 임금,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 문서를 갖고 있지 못한 셈이다.

○ 세부 변수별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현황을 보면 여성, 25세미만, 근속 1년 이하에서 미작성과 미교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여성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율이 30.2%, 20세 미만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의 미교부 비율은 38.6%에 이르고 있다. 노동시장내 취약 노동자층에 근로계약서 체결 위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2-4] 세부 변수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현황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	
		작성	미작성	교부	미교부
성	남성	246 (85.1%)	43 (14.9%)	219 (76.6%)	67 (23.4%)
	여성	277 (80.5%)	67 (19.5%)	236 (69.8%)	102 (30.2%)
연령	20세미만	56 (80.0%)	14 (20.0%)	43 (61.4%)	27 (38.6%)
	25세미만	255 (81.2%)	59 (18.8%)	217 (70.5%)	91 (29.5%)
	30세미만	102 (84.3%)	19 (15.7%)	95 (79.2%)	25 (20.8%)
	40세미만	32 (88.9%)	4 (11.1%)	28 (77.8%)	8 (22.2%)
	50세미만	40 (88.9%)	5 (11.1%)	35 (79.5%)	9 (20.5%)
	50세이상	37 (80.4%)	9 (19.6%)	36 (80.0%)	9 (20.0%)
근속	3개월이하	111 (82.8%)	23 (17.2%)	96 (72.7%)	36 (27.3%)
	6개월이하	162 (82.7%)	34 (17.3%)	142 (72.8%)	53 (27.2%)
	1년이하	239 (83.3%)	48 (16.7%)	207 (73.4%)	75 (26.6%)
	1년초과	10 (90.9%)	1 (9.1%)	10 (90.9%)	1 (9.1%)

3) 임금

○ 주간 시급액 현황을 보면 최하 5,700원, 최고 10,000원이다.
- 평균은 8,478원이며, 중간값은 8,590원이다. 주간 시급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84명이며, 그에 따라 전체 평균 시급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고 있다.

[그림 2-3] 주간 시급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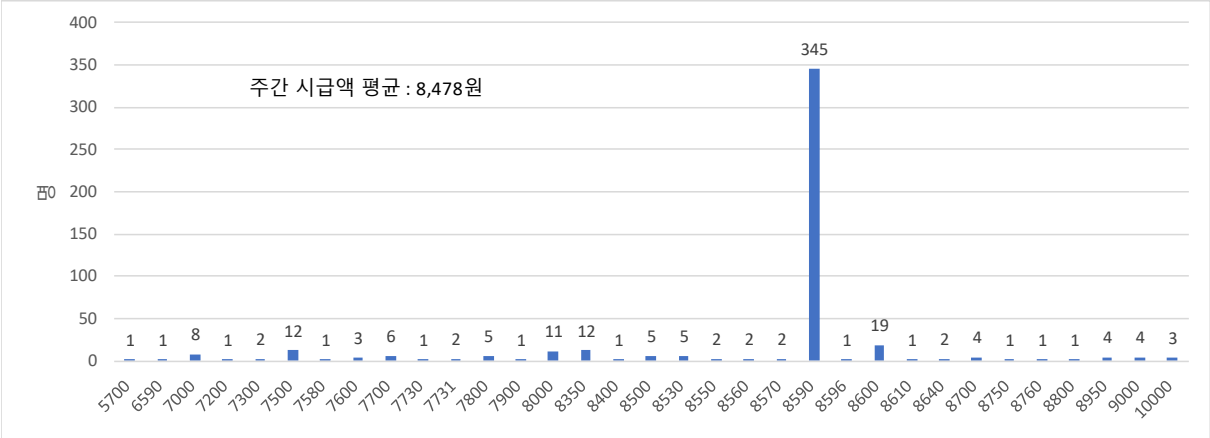

- 세부 변수별로 시급액 평균을 보면 여성, 20세 미만에서 시급액 평균이 낮다. 연령에서는 50대 미만에서 모두 시급액 평균이 최저임금액을 하회하고 있다.

[표 2-5] 세부 변수별 시급액 평균

구분		시급액(원)	구분		시급액(원)
성	남성	8,483	연령	20세미만	8,466
	여성	8,473		25세미만	8,468
근속	3개월이하	8,435		30세미만	8,512
	6개월이하	8,470		40세미만	8,429
	1년이하	8,496		50세미만	8,440
	1년초과	8,599		50세이상	8,532

○ 야간 시급액 분포를 보면 8,590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다. 야간 시급액 평균은 8,718원이다.
- 야간 시급액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자가 23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 야간 시급액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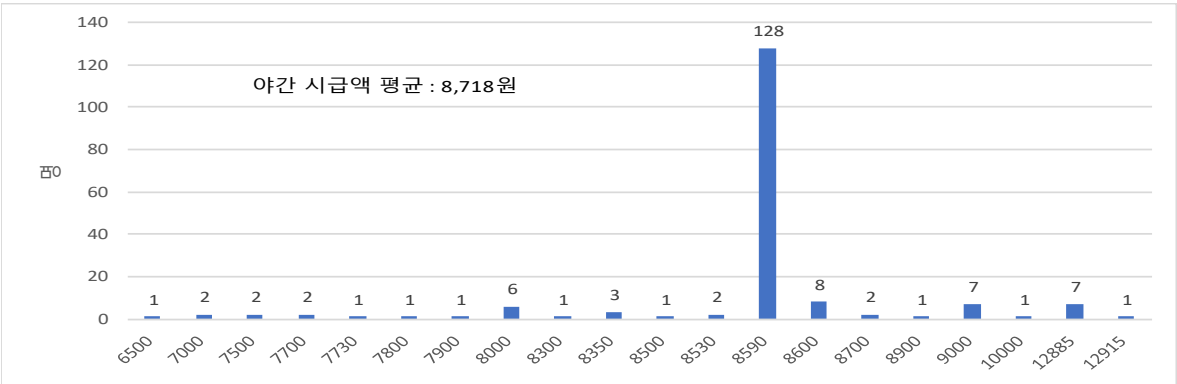

- 세부 변수별로 야간 시급액 평균을 보면 여성이 미미하나마 약간 높으며, 근속이 짧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시급액이 높은 편이다. 연령에서는 30대에서 최저임금 시급액에 미달하고 있다.

[표 2-6] 세부 변수별 야간 시급액 평균

구분		시급액(원)	구분		시급액(원)
성	남성	8,712	연령	20세미만	8,991
	여성	8,738		25세미만	8,727
근속	3개월이하	8,842		30세미만	8,718
	6개월이하	8,714		40세미만	8,407
	1년이하	8,686		50세미만	8,590
	1년초과	8,693		50세이상	8,616

○ 최저임금 미만자는 100명이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15.7%에 이른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 16.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2].

[표 2-7]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구분		인원	비율(%)
성	남성	40	13.8%
	여성	60	17.4%
근속	3개월이하	20	14.9%
	6개월이하	33	16.8%
	1년이하	44	15.3%
연령	20세미만	8	11.4%
	25세미만	57	18.2%
	30세미만	18	14.8%
	40세미만	9	25.0%
	50세미만	5	11.1%
	50세이상	3	6.5%

* 비율은 구성비가 아닌 변수별 모집단 대비 비율임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에서,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20세~25세와 30대에서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있음이 104명(16.4%), 없음이 93명(14.7%), 그리고 잘 모름이 437명(68.9%)였다.

2) 김유선(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림 2-5] 퇴직금 지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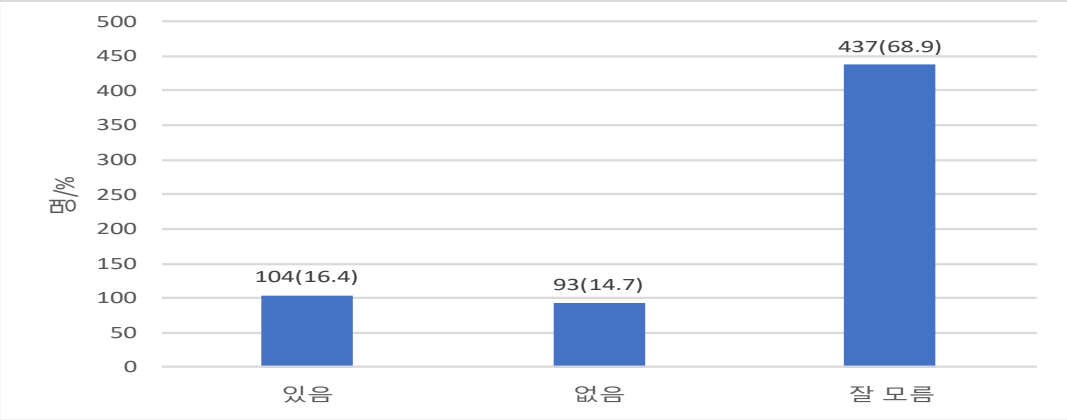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로 보면 남성과 30대, 그리고 근속 3개월 이하와 6개월 이상~1년 미만에서 퇴직금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2-8] 퇴직금 지급 여부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성	남성	54 (18.6%)	35 (12.1%)	201 (69.3%)	연령	20세미만	8 (11.4%)	10 (14.3%)	52 (74.3%)
	여성	49 (14.3%)	58 (16.9%)	236 (68.8%)		25세미만	37 (11.8%)	38 (12.1%)	238 (76.0%)
근속	3개월이하	18 (13.4%)	19 (14.2%)	97 (72.4%)		30세미만	21 (17.2%)	15 (12.3%)	86 (70.5%)
	6개월이하	33 (16.8%)	27 (13.8%)	136 (69.4%)		40세미만	10 (27.8%)	7 (19.4%)	19 (52.8%)
	1년이하	47 (16.4%)	45 (15.7%)	194 (67.8%)		50세미만	11 (24.4%)	14 (31.1%)	20 (44.4%)
	1년초과	5 (45.5%)	1 (9.1%)	5 (45.5%)		50세이상	16 (34.8%)	9 (19.6%)	21 (45.7%)

- 근속에서는 1년 초과에서 없음과 잘 모름의 비율이 1/2을 넘어서고 있다. 당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실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조사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334명(52.8%)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충 알고 있다'는 246명(38.9%), '잘 모른다'는 53명(8.4%)이다.

[그림 2-6] 주휴수당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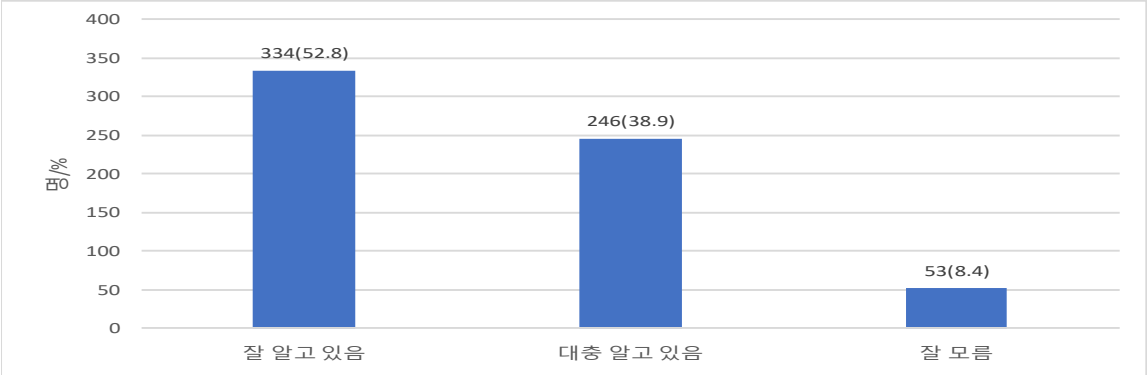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대충 알고 있음'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잘 모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근속에서는 인원은 적지만 1년 초과에서 '잘 알고 있음' 비율이 높지만, '잘 모름'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알고 있음'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표 2-9] 주휴수당 인지도

구분		잘 알고 있음	대충 알고 있음	잘 모름
성	남성	154 (53.1%)	106 (36.6%)	30 (10.3%)
	여성	179 (52.3%)	140 (40.9%)	23 (6.7%)
근속	3개월이하	62 (46.3%)	62 (46.3%)	10 (7.5%)
	6개월이하	102 (52.0%)	81 (41.3%)	13 (6.6%)
	1년이하	156 (54.7%)	101 (35.4%)	28 (9.8%)
	1년초과	7 (63.6%)	2 (18.2%)	2 (18.2%)
연령	20세미만	30 (42.9%)	33 (47.1%)	7 (10.0%)
	25세미만	156 (49.8%)	133 (42.5%)	24 (7.7%)
	30세미만	61 (50.0%)	52 (42.6%)	9 (7.4%)
	40세미만	21 (58.3%)	10 (27.8%)	5 (13.9%)
	50세미만	33 (73.3%)	8 (17.8%)	4 (8.9%)
	50세이상	32 (71.1%)	10 (22.2%)	3 (6.7%)

○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실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 단시간 노동자의 60.0%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내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관행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주휴수당 지급 여부

구분	전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받음	123	19.5	113	31.7
못받음	224	35.4	214	59.9
해당없음	285	45.1	30	8.4
전체	632	100.0	357	100.0

- 실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여성, 근속 1년 이하, 연령에서는 40세 미만 층에서 주휴수당을 못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1] 주휴수당 수령 여부(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구분		받음	못받음	해당없음
성	남성	62 (33.9%)	111 (60.7%)	10 (5.5%)
	여성	50 (28.9%)	103 (59.5%)	20 (11.6%)
근속	3개월이하	27 (32.5%)	47 (56.6%)	9 (10.8%)
	6개월이하	29 (29.0%)	64 (64.0%)	7 (7.0%)
	1년이하	51 (31.7%)	98 (60.9%)	12 (7.5%)
	1년초과	6 (60.0%)	3 (30.0%)	1 (10.0%)
연령	20세미만	8 (28.6%)	17 (60.7%)	3 (10.7%)
	25세미만	39 (25.8%)	105 (69.5%)	7 (4.6%)
	30세미만	26 (32.5%)	48 (60.0%)	6 (7.5%)
	40세미만	9 (36.0%)	15 (60.0%)	1 (4.0%)
	50세미만	18 (47.4%)	13 (34.2%)	7 (18.4%)
	50세이상	12 (36.4%)	15 (45.5%)	6 (18.2%)

○ 주당 15시간 근무자중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액을 추정하였다.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서 ‘못받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노동자 24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주휴수당액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주휴수당 금액 = [시급액×8×(주당근로시간/40시간)].

[표 2-12] 미지급 주휴수당 추정액

구분		평균	합계
성	남성	51,869	6,276,132
	여성	49,105	6,039,950
연령	20세미만	40,573	811,458
	25세미만	47,021	5,266,406
	30세미만	52,158	2,816,526
	40세미만	62,170	994,722
	50세미만	57,639	1,152,778
	50세이상	59,040	1,239,832
근속	3개월이하	52,862	2,960,276
	6개월이하	51,266	3,639,898
	1년이하	48,573	5,343,052
	1년초과	53,700	214,800
전체		50,476	12,316,082

- 전체 미지급 주휴수당 추정액은 1,231만여원으로 1인당 평균은 50,476원이다. 남성이 평균액이 많은 편이며, 30대에서 평균액이 가장 크다. 근속에서는 3개월 이하와 1년 초과에서 평균액이 많은 편이다.

4) 인격적 대우

○ 일하면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50명(7.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7] 성희롱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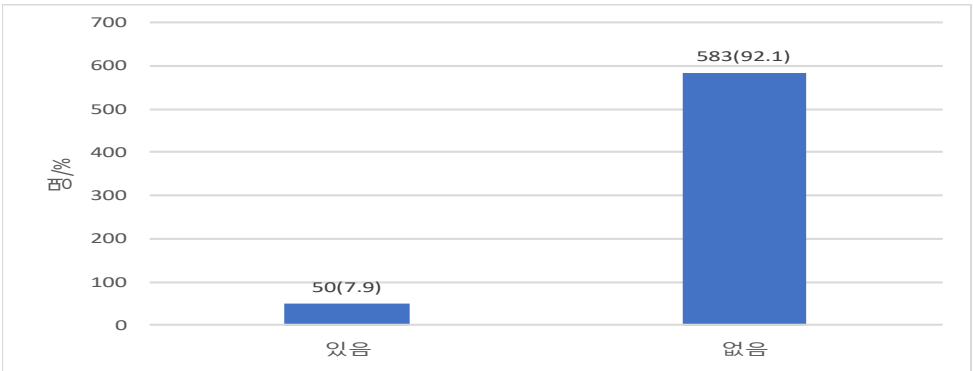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성희롱 유경험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92.0%로 압도적이며, 연령에서는 30세 미만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30세 미만의 여성이 집중적으로 성희롱을 경험한 것이다.

[표 2-13] 성희롱 유경험자 세부 현황

구분		인원	비율(%)	구분		인원	비율(%)
성	남성	4	8.0	연령	20세미만	5	10.2
	여성	46	92.0		25세미만	23	46.9
근속	3개월이하	9	18.8		30세미만	6	12.2
	6개월이하	11	22.9		40세미만	5	10.2
	1년이하	25	52.1		50세미만	4	8.2
	1년초과	3	6.3		50세이상	6	12.2

- 성희롱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누가 성희롱을 가했는가'를 확인해 보면 50명 모두 '손님'이 성희롱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주나 동료가 성희롱을 가했다는 답변은 없었다.

○ 폭언,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성희롱 보다 더 많았다. 전체 조사참여자의 24.8%인 158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 지역내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 4명중 1명은 폭언, 폭력을 경험한 것이다.

[그림 2-8] 폭언·폭력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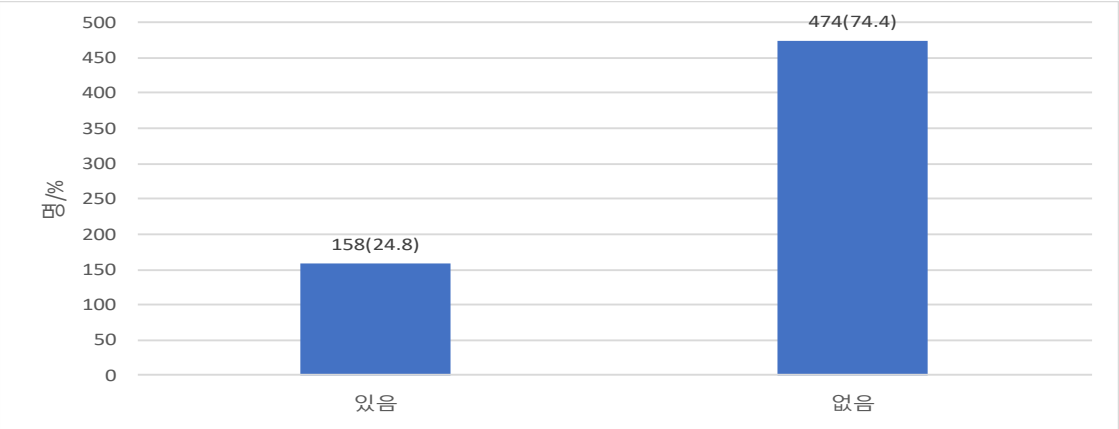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성별로, 연령별로 폭언, 폭력 경험 유무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유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그림 2-9] 성별-연령별 폭언, 폭력 유경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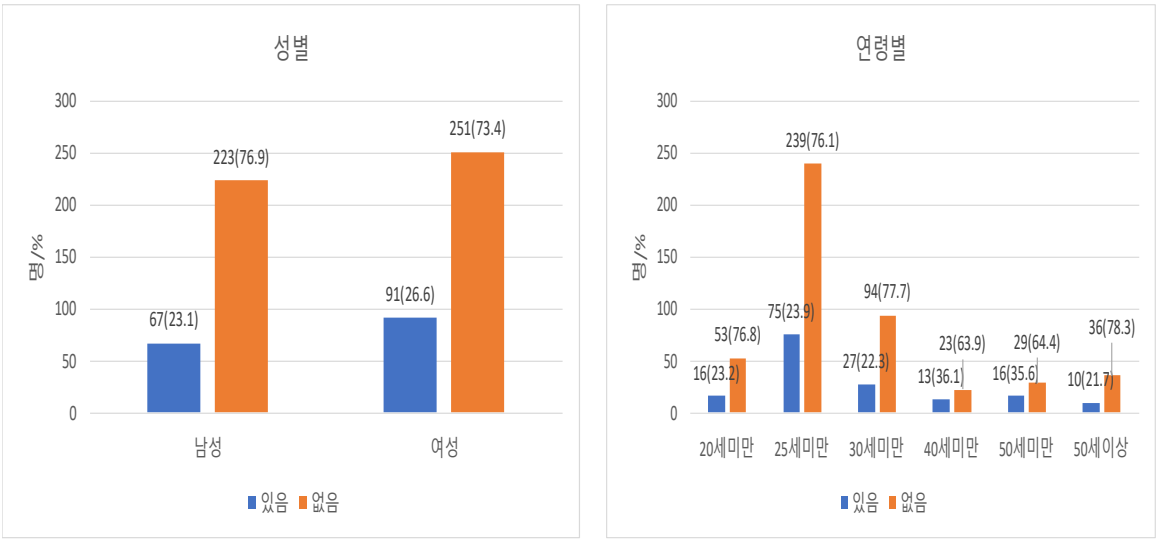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연령대별로 보면 인원 수는 적지만 30대와 40대의 연령층에서 폭언·폭력 유경험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 ‘누가 폭언·폭력을 행사했는가’를 파악한 결과, 폭언·폭력 유경험자 158명중 155명이 ‘손님’이라고 응답하였다.
- 사업주나 동료가 ‘폭언, 폭력을 행사’했다는 답변은 2명이었다.

5) 기타 근로관계

○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5명 만이 ‘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의 0.8%에 해당한다.
- 이중 4명은 여성이며, 연령은 20세~24세가 3명, 25세~29세가 2명이었다.

○ 파손/분실/부자재 구입 등의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처리 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12명이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 12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편이며, 근속에서는 1년 이하, 연령에서는 20세~24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4] 세부 변수별 임금 삭감 여부

구분		인원	비율(%)
성	남성	5	41.7
	여성	7	58.3
근속	6개월이하	4	33.3
	1년이하	8	66.7
연령	20세미만	1	8.3
	25세미만	9	75.0
	30세미만	1	8.3
	40세미만	1	8.3

○ 시재 마감후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참여자의 1/2 가량은 '본인이 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시재 마감후 차액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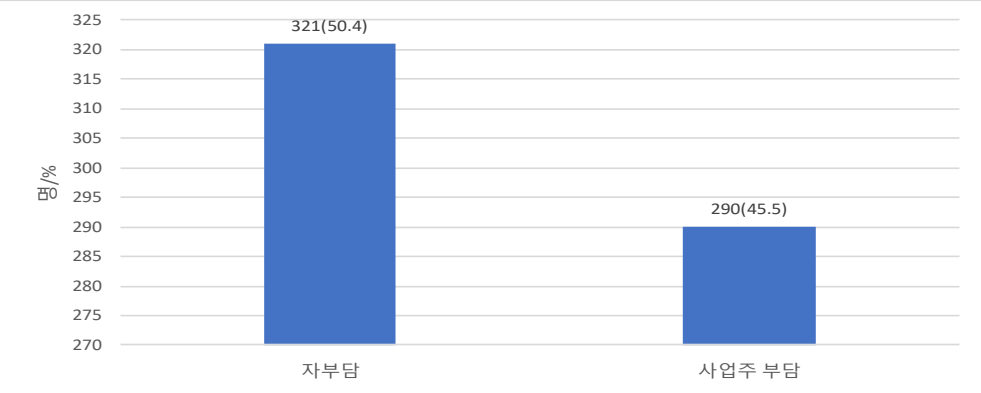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이를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근속 3개월 이상~6개월미만, 그리고 20세 미만에서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5] 세부 변수별 마감후 차액 처리

구분		자부담	사업주 부담	구분		자부담	사업주 부담
성	남성	140 (50.0%)	140 (50.0%)	연령	20세미만	39 (58.2%)	28 (41.8%)
	여성	181 (54.7%)	150 (45.3%)		25세미만	161 (52.8%)	144 (47.2%)
근속	3개월이하	66 (51.2%)	63 (48.8%)		30세미만	62 (52.5%)	56 (47.5%)
	6개월이하	109 (58.9%)	76 (41.1%)		40세미만	19 (55.9%)	15 (44.1%)

	1년이하	139 (49.6%)	141 (50.4%)		50세미만	19 (44.2%)	24 (55.8%)
	1년초과	4 (36.4%)	7 (63.6%)		50세이상	21 (48.8%)	22 (51.2%)

○ 초과근로 여부를 살펴보면 51명(8.0%)이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를 세부 변수별로 보면 여성, 근속 1년 이하, 30대에서 초과근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6] 세부 변수별 초과근로 여부

구분		있음	횟수	없음	구분		있음	횟수	없음
성	남성	10 (3.5%)	1.8	279 (96.5%)	연령	20세미만	6 (8.6%)	1.4	64 (91.4%)
	여성	41 (12.0%)	1.8	302 (88.0%)		25세미만	24 (7.7%)	1.8	289 (92.3%)
근속	3개월이하	8 (6.0%)	2.6	126 (94.0%)		30세미만	5 (4.1%)	2.0	117 (95.9%)
	6개월이하	19 (9.7%)	1.2	176 (90.3%)		40세미만	4 (11.1%)	2.7	32 (88.9%)
	1년이하	23 (8.1%)	2.0	262 (91.9%)		50세미만	4 (8.9%)	1.0	41 (91.1%)
	1년초과	0 (0.0%)	-	11 (100.0%)		50세이상	8 (17.8%)	1.8	37 (82.2%)

- 주당 초과근로 횟수의 전체 평균은 1.8회이다. 세부 변수별로 보면 근속 3개월 이하, 그리고 30대에서 초과근로 횟수가 많은 편이다.

○ 업무와 무관한 일(예 : 개인 심부름 등)을 지시하는지 여부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0.6%인 4명만이 ‘있다’고 밝혔다.

- 이 4명의 세부 현황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 2명, 연령에서는 모두 3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잡무(예 : 청소, 인수인계 시간 등)를 수행한 경우에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1/2 가량은 잡무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혔다.

[그림 2-11] 근무시간외 잡무수행시 근무시간 포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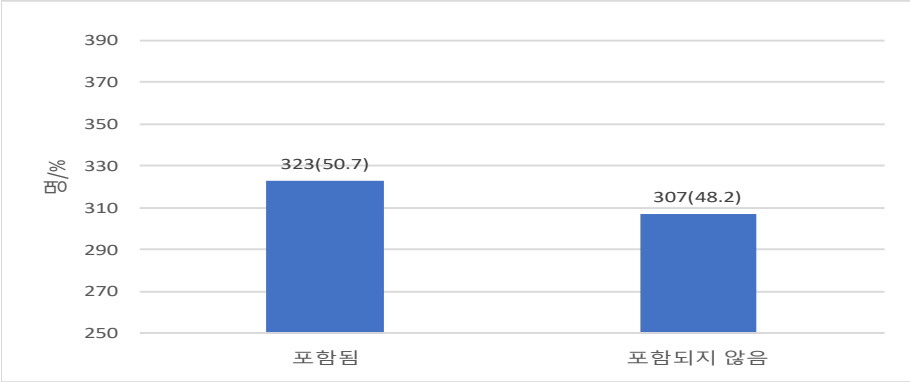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로 잡무시간의 근무시간 포함여부를 보면 여성, 연령에서는 20세~24세, 40대에서 포함 안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17] 세부 변수별 잡무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구분		포함됨	포함안됨	구분		포함됨	포함안됨
성	남성	155 (53.8%)	133 (46.2%)	연령	20세미만	38 (54.3%)	32 (45.7%)
	여성	168 (49.1%)	174 (50.9%)		25세미만	153 (49.2%)	158 (50.8%)
근속	3개월이하	67 (50.8%)	65 (49.2%)		30세미만	65 (53.3%)	57 (46.7%)
	6개월이하	99 (50.8%)	96 (49.2%)		40세미만	18 (50.0%)	18 (50.0%)
	1년이하	149 (52.3%)	136 (47.7%)		50세미만	21 (46.7%)	24 (53.3%)
	1년초과	5 (45.5%)	6 (54.5%)		50세이상	28 (62.2%)	17 (37.8%)

○ 4시간 연속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41.0%인 261명은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180명(28.3%)은 30분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190명(29.8%)은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림 2-12] 휴게시간 부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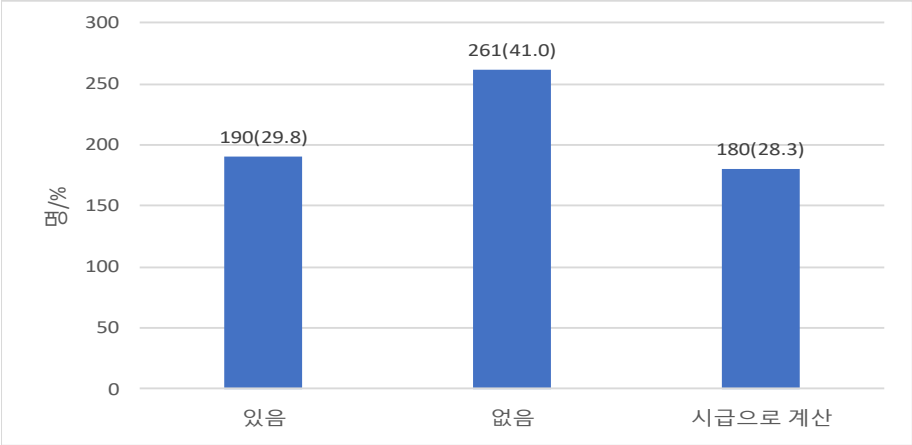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 근속 6개월 이하에서 휴게시간이 없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연령에서는 25세 미만과 40대에서 휴게시간이 없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2-18] 휴게시간 부여 여부

구분		있음	없음	시급으로 계산	구분		있음	없음	시급으로 계산
성	남성	88 (30.3%)	104 (35.9%)	98 (33.8%)	연령	20세미만	23 (32.9%)	29 (41.4%)	18 (25.7%)
	여성	102 (29.9%)	157 (46.0%)	82 (24.0%)		25세미만	91 (29.0%)	131 (41.7%)	92 (29.3%)
근속	3개월이하	34 (25.4%)	56 (41.8%)	44 (32.8%)		30세미만	35 (28.7%)	45 (36.9%)	42 (34.4%)
	6개월이하	53 (27.5%)	89 (46.1%)	51 (26.4%)		40세미만	11 (30.6%)	13 (36.1%)	12 (33.3%)
	1년이하	94 (32.9%)	109 (38.1%)	83 (29.0%)		50세미만	18 (40.9%)	20 (45.5%)	6 (13.6%)
	1년초과	5 (45.5%)	5 (45.5%)	1 (9.1%)		50세이상	12 (27.3%)	22 (50.0%)	10 (22.7%)

6) 사회보험

○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대체로 20% 대의 가입률과 미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잘 모름’의 비율이 40%대 후반에서 50%를 넘어서고 있어 실제 미가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9] 사회보험 가입 현황

구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188 (29.7)	138 (21.8)	144 (22.7)	166 (26.2)
미가입	143 (22.6)	164 (25.9)	159 (25.1)	143 (22.6)
잘 모름	302 (47.7)	331 (52.3)	330 (52.1)	324 (51.2)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보면, 남성에서 가입률이 약간 높은 편이며, 근속에서는 인원은 적지만 1년 이상 근무자의 가입률이 확연히 높은 편이다.
- 연령에서는 25세~39세 사이에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표 2-20] 세부 변수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현황

구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미가입	잘 모름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성	남성	88 (30.3%)	49 (16.9%)	153 (52.8%)	69 (23.8%)	56 (19.3%)	165 (56.9%)
	여성	100 (29.2%)	94 (27.4%)	149 (43.4%)	69 (20.1%)	108 (31.5%)	166 (48.4%)
근속	3개월이하	42 (31.3%)	31 (23.1%)	61 (45.5%)	27 (20.1%)	36 (26.9%)	71 (53.0%)
	6개월이하	54 (27.7%)	41 (21.0%)	100 (51.3%)	41 (21.0%)	46 (23.6%)	108 (55.4%)
	1년이하	84 (29.4%)	66 (23.1%)	136 (47.6%)	63 (22.0%)	76 (26.6%)	147 (51.4%)
	1년초과	6 (54.5%)	2 (18.2%)	3 (27.3%)	6 (54.5%)	2 (18.2%)	3 (27.3%)
연령	20세미만	10 (14.3%)	11 (15.7%)	49 (70.0%)	5 (7.1%)	13 (18.6%)	52 (74.3%)
	25세미만	86 (27.4%)	59 (18.8%)	169 (53.8%)	62 (19.7%)	71 (22.6%)	181 (57.6%)
	30세미만	43 (35.2%)	28 (23.0%)	51 (41.8%)	33 (27.0%)	28 (23.0%)	61 (50.0%)
	40세미만	16 (44.4%)	9 (25.0%)	11 (30.6%)	14 (38.9%)	11 (30.6%)	11 (30.6%)
	50세미만	16 (35.6%)	16 (35.6%)	13 (28.9%)	14 (31.1%)	17 (37.8%)	14 (31.1%)
	50세이상	16 (35.6%)	20 (44.4%)	9 (20.0%)	10 (22.2%)	24 (53.3%)	11 (24.4%)

- 동일하게 세부 변수별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남성, 근속 1년 이상에서 가입률이 높은 편이며,
- 연령에서는 2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1] 세부 변수별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현황

구분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잘 모름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성	남성	76 (26.2%)	52 (17.9%)	162 (55.9%)	78 (26.9%)	49 (16.9%)	163 (56.2%)
	여성	68 (19.8%)	107 (31.2%)	168 (49.0%)	88 (25.7%)	94 (27.4%)	161 (46.9%)
근속	3개월이하	31 (23.1%)	35 (26.1%)	68 (50.7%)	35 (26.1%)	32 (23.9%)	67 (50.0%)
	6개월이하	42 (21.5%)	45 (23.1%)	108 (55.4%)	50 (25.6%)	39 (20.0%)	106 (54.4%)
	1년이하	63 (22.0%)	74 (25.9%)	149 (52.1%)	72 (25.2%)	66 (23.1%)	148 (51.7%)
	1년초과	7 (63.6%)	1 (9.1%)	3 (27.3%)	8 (72.7%)	2 (18.2%)	1 (9.1%)
연령	20세미만	6 (8.6%)	13 (18.6%)	51 (72.9%)	12 (17.1%)	10 (14.3%)	48 (68.6%)
	25세미만	61 (19.4%)	69 (22.0%)	184 (58.6%)	72 (22.9%)	62 (19.7%)	180 (57.3%)
	30세미만	33 (27.0%)	28 (23.0%)	61 (50.0%)	36 (29.5%)	28 (23.0%)	58 (47.5%)
	40세미만	15 (41.7%)	11 (30.6%)	10 (27.8%)	14 (38.9%)	10 (27.8%)	12 (33.3%)
	50세미만	16 (35.6%)	16 (35.6%)	13 (28.9%)	17 (37.8%)	15 (33.3%)	13 (28.9%)
	50세이상	13 (28.9%)	22 (48.9%)	10 (22.2%)	15 (33.3%)	18 (40.0%)	12 (26.7%)

3. 편의점 사업주 설문조사

1) 편의점 점주 설문조사 개요

○ 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편의점 점주(점주 가족)에 대해 간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단시간 노동자 설문과 동일하게 노동권익서포터즈가 점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편의점 점주 실태조사에는 부천지역 편의점주(가족 포함) 260명이 참여하였다.

[표 2-22] 사업주 실태조사 참여 점포 현황

구분		개소	비율(%)	구분		개소	비율(%)
성	남성	142	54.6	점포 이력	1년미만	36	15.0
	여성	118	45.4		3년미만	92	38.3
연령	20대	18	7.0		5년미만	49	20.4
	30대	43	16.7		10년미만	39	16.3
	40대	65	25.3		10년이상	24	10.0

구분		개소	비율(%)	구분		개소	비율(%)
	50대	90	35.0	가맹 형태	위탁가맹점	126	49.8
	60대이상	41	16.0		순수가맹점	123	48.6
소유 형태	자가소유	11	4.3		직영점	4	1.6
	월세	123	48.2	규모	5인미만	154	71.6
	전세	6	2.4		5인이상	61	28.4
	보증부월세	36	14.1				
	기타	79	31.0				

- 세부적으로 보면 점포 이력에서는 1/2 이상(53.3%)이 점포를 오픈한 지 3년 미만의 신규 점포이다. 조사 참여 점주의 1/2(54.6%)은 남성이며, 대체로 40대 이상의 연령대를 보이고 있다.
- 점포의 소유 형태는 1/2 가량이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부 월세 항목이 있지만 월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실제 '보증금+월세'를 월세로 기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맹형태는 위탁과 순수가 각각 1/2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투자)과 자부담 투자를 통해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순수 가맹점은 본사의 지원없이 오로지 자부담 형태로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에 따라 소유형태의 기타 항목 대부분은 '본사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가맹 형태와 점포 소유구조

구분	자가소유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기타	전체
위탁가맹점	3 (2.4%)	34 (27.6%)	1 (.8%)	13 (10.6%)	72 (58.5%)	123 (100.0%)
순수가맹점	8 (6.6%)	84 (68.9%)	4 (3.3%)	23 (18.9%)	3 (2.5%)	122 (100.0%)
직영점	-	-	1 (25.0%)	-	3 (75.0%)	4 (100.0%)
소계	11 (4.4%)	118 (47.4%)	6 (2.4%)	36 (14.5%)	78 (31.3%)	249 (100.0%)

- 규모는 노동자만을 의미하며 조사 참여 점포의 2/3 이상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지만, 1/3 가량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2) 가맹점 운영 실태

(1) 종사자 규모

○ 조사 참여 점포의 인력 규모를 보면 전체의 80.5%는 3인 이하의 가족 종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71.6%는 4인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종사자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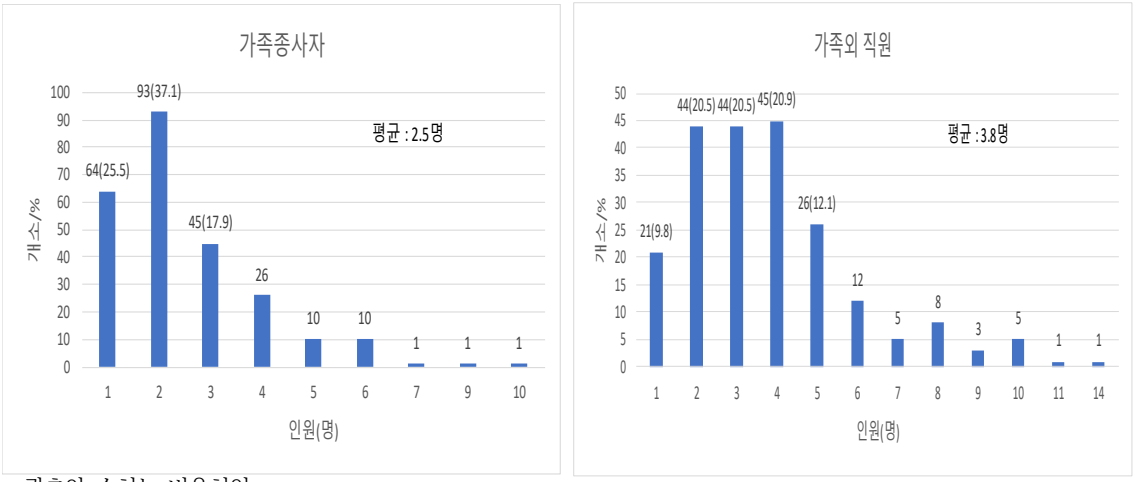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가족종사자 평균은 2.5명이며, 가족 이외의 직원 수 평균은 3.8명이다.

(2) 영업 형태 : 월 휴일 및 영업시간

○ 월 평균 휴일 수를 보면, 조사 참여 점포의 93.8%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루 운영시간 또한 조사 참여 점포의 87.3%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월 평균 휴일 및 1일 운영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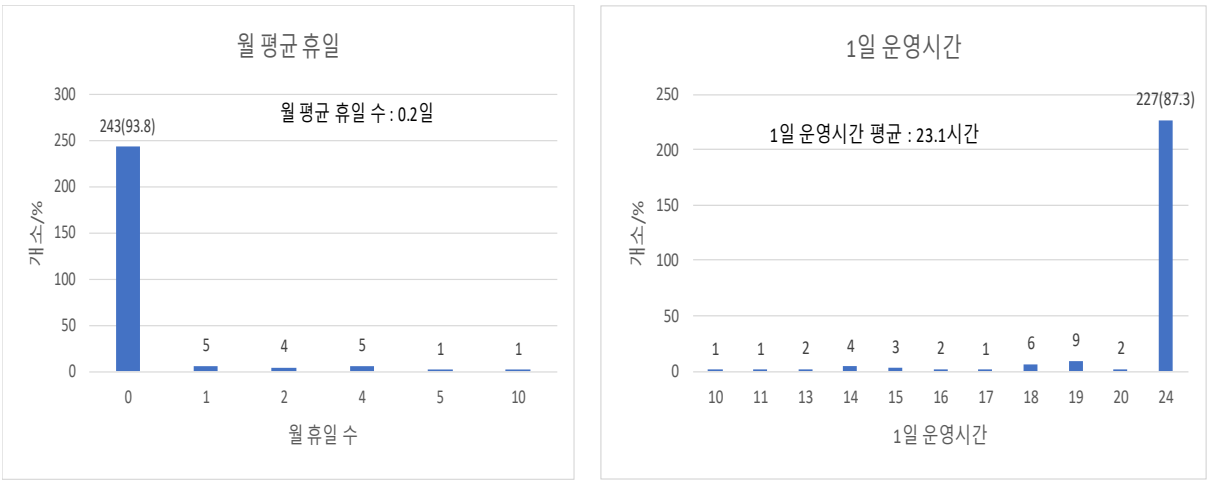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의무와 관련한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왔던 상태였다. 현재는 오전 1~6시까지의 영업 실적이 3개월 이상 적자가 이어진 가맹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3)[3].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24시간 운영이 아닌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2) 로열티

○ 로열티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 점포중 237개소가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9개소가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한다. 가맹비, 시설비, 물류 마진, 그리고 로열티 등이다.
- 물류마진과 더불어 로열티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본사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점포 투자 형태와 매출총이익 수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4].

[표 2-24] 주요 변수별 로열티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지급	미지급	구분		지급	미지급
가맹 형태	위탁가맹점	119 (97.5%)	3 (2.5%)	소유	자가소유	9 (90.0%)	1 (10.0%)
	순수가맹점	111 (97.4%)	3 (2.6%)		월세	113 (98.3%)	2 (1.7%)
	직영점	1 (33.3%)	2 (66.7%)		전세	5 (83.3%)	1 (16.7%)
					보증부월세	33 (97.1%)	1 (2.9%)
					기타	73 (94.8%)	4 (5.2%)

○ 수수료율(또는 수수료액)을 밝힌 점포는 97개소이다. 우선 수수료율을 파악해 보면, 30.0%가 20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60.0%(13개소, 5.5%)였다.

3) 심야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가맹사업법·시행령 조항은 2014년 2월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8년 4월에 개정되었다.
4) 월 매출 총이익이 낮으면 수수료율도 낮아지며, 매출총이익이 많을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지도록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울러 점포 투자 형태, 즉 순수가맹인가 위탁가맹인가에 따라서도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한다.

[그림 2-15] 수수료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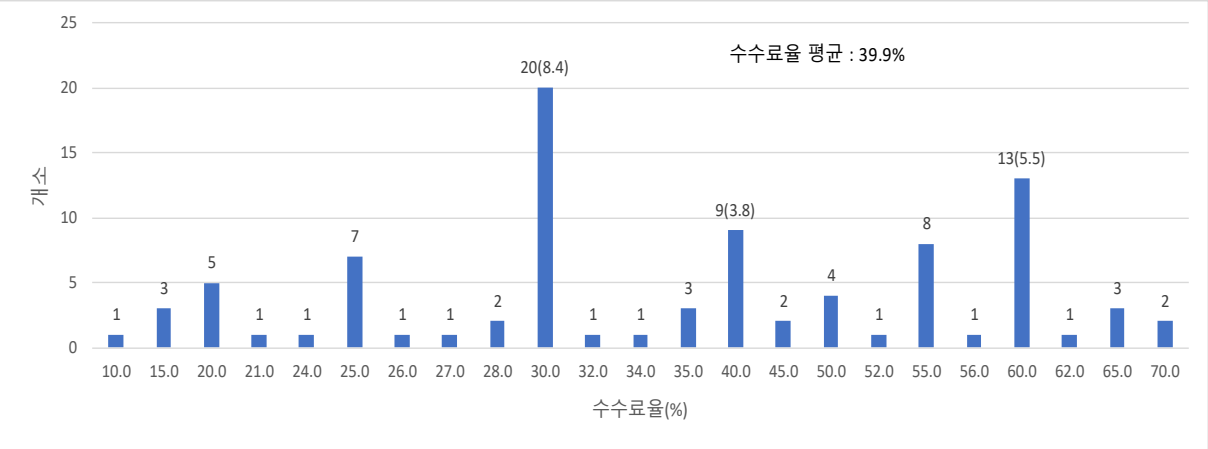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수수료율 평균은 39.9%였다.
- 월 정액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점포는 6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최하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었다.

○ 현재의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는 참여 점포의 65.3%가 '높다'(매우 높다 포함)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 점포의 2/3가 현재의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 5점 척도 점수 평균을 보아도 2.0이 나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림 2-16] 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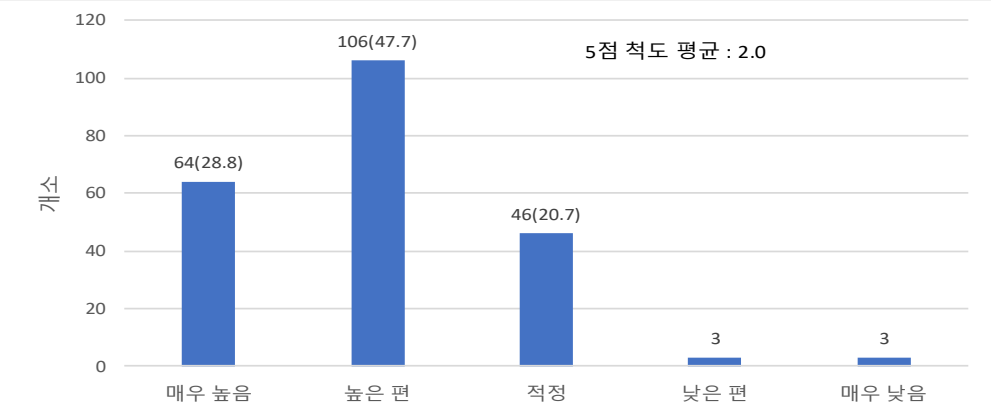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점포 이력에서는 3년~5년 사이에서 '높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가맹형태에서는 위탁 가맹점에서 높다는 비율이 약간 높다.

[표 2-25] 세부 변수별 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개소)

구분		매우 높음	높은 편	적정	낮은 편	매우 낮음	5점 척도
점포 이력	1년미만	6 (20.0%)	15 (50.0%)	8 (26.7%)	-	1 (3.3%)	2.2
	3년미만	18 (23.7%)	40 (52.6%)	17 (22.4%)	-	1 (1.3%)	2.0
	5년미만	16 (40.0%)	17 (42.5%)	5 (12.5%)	2 (5.0%)	-	1.8
	10년미만	10 (29.4%)	18 (52.9%)	5 (14.7%)	1 (2.9%)	-	1.9
	10년이상	6 (27.3%)	10 (45.5%)	5 (22.7%)	-	1 (4.5%)	2.1
가맹 형태	위탁가맹점	38 (34.5%)	45 (40.9%)	24 (21.8%)	1 (0.9%)	2 (1.8%)	1.9
	순수가맹점	24 (22.9%)	56 (53.3%)	22 (21.0%)	2 (1.9%)	1 (1.0%)	2.0
	직영점	-	1 (100.0%)	-	-	-	2.0
점포 소유	자가소유	2 (22.2%)	3 (33.3%)	4 (44.4%)	-	-	2.2
	월세	22 (20.4%)	60 (55.6%)	22 (20.4%)	3 (2.8%)	1 (.9%)	2.1
	전세	3 (50.0%)	3 (50.0%)	-	-	-	1.5
	보증부월세	15 (55.6%)	8 (29.6%)	4 (14.8%)	-	-	1.6
	기타	22 (31.9%)	29 (42.0%)	16 (23.2%)	-	2 (2.9%)	2.0

- 점포 소유에서는 보증부 월세에서 수수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가 소유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최저임금 및 코로나 대응

○ 2018년,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2순위까지 파악한 결과, 가장 주요하게는 직원 수를 감소시키거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식

구분	1순위		2순위	
	점포 수	비율(%)	점포 수	비율(%)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16	6.5	6	3.1
본사의 간접비 지원	10	4.1	11	5.7
무인,셀프서비스 확대	4	1.6	3	1.6
영업시간 조정	7	2.9	12	6.3
직원 수 감소	103	42.0	27	14.1
직원 근무시간 감소	57	23.3	77	40.1
정부 지원책 활용	15	6.1	24	12.5
제품 가격 인상	1	0.4	1	0.5

구분	1순위		2순위	
	점포 수	비율(%)	점포 수	비율(%)
기타	32	13.1	31	16.1
전체	245	100.0	192	100.0

- 위 대응 양상은 2순위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직원 수·근무시간 감소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기타의 주관식 답변은 '별다른 대응 없이 전과 동일함'과 '해당 없음' 답변이 많았다. 해당 내용은 주로 점포 개설 3년 미만의 신규 점포에서 응답이 많았다. 즉,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이후에 점포를 개설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 세부 변수별로 보면 직원 수 감소는 점포 이력 5년 미만, 그리고 직영·위탁점, 점포 소유 형태에서는 자가 소유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직원 수 감소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직원 수 감소 대응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용인상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표 2-27] 최저임금 대응 양상(1순위)

구분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본사의 간접비 지원	무인,셀프서비스 확대	영업시간 조정	직원 수 감소	직원 근무시간 감소	정부 지원책 활용	제품 가격 인상	기타
점포이력	1년미만	1 (3.1%)	2 (6.3%)	0 (0.0%)	0 (0.0%)	10 (31.3%)	7 (21.9%)	3 (9.4%)	0 (0.0%)	9 (28.1%)
	3년미만	5 (5.8%)	1 (1.2%)	1 (1.2%)	2 (2.3%)	34 (39.5%)	24 (27.9%)	8 (9.3%)	0 (0.0%)	11 (12.8%)
	5년미만	5 (10.4%)	2 (4.2%)	1 (2.1%)	2 (4.2%)	20 (41.7%)	12 (25.0%)	1 (2.1%)	1 (2.1%)	4 (8.3%)
	10년미만	3 (7.9%)	4 (10.5%)	2 (5.3%)	3 (7.9%)	15 (39.5%)	8 (21.1%)	2 (5.3%)	0 (0.0%)	1 (2.6%)
	10년이상	0 (0.0%)	0 (0.0%)	0 (0.0%)	0 (0.0%)	14 (60.9%)	5 (21.7%)	1 (4.3%)	0 (0.0%)	3 (13.0%)
가맹형태	위탁가맹점	10 (8.4%)	5 (4.2%)	1 (.8%)	4 (3.4%)	49 (41.2%)	24 (20.2%)	8 (6.7%)	1 (.8%)	17 (14.3%)
	순수가맹점	5 (4.3%)	5 (4.3%)	3 (2.6%)	3 (2.6%)	50 (43.5%)	32 (27.8%)	6 (5.2%)	0 (0.0%)	11 (9.6%)
	직영점	0 (0.0%)	0 (0.0%)	0 (0.0%)	0 (0.0%)	2 (50.0%)	1 (25.0%)	0 (0.0%)	0 (0.0%)	1 (25.0%)
소유형태	자가소유	1 (9.1%)	0 (0.0%)	2 (18.2%)	0 (0.0%)	2 (18.2%)	3 (27.3%)	0 (0.0%)	0 (0.0%)	3 (27.3%)
	월세	6 (5.1%)	4 (3.4%)	1 (.9%)	5 (4.3%)	54 (46.2%)	29 (24.8%)	4 (3.4%)	1 (.9%)	13 (11.1%)
	전세	0 (0.0%)	0 (0.0%)	0 (0.0%)	0 (0.0%)	4 (66.7%)	1 (16.7%)	0 (0.0%)	0 (0.0%)	1 (16.7%)
	보증부월세	2 (6.1%)	2 (6.1%)	0 (0.0%)	1 (3.0%)	10 (30.3%)	9 (27.3%)	6 (18.2%)	0 (0.0%)	3 (9.1%)
	기타	6 (8.1%)	4 (5.4%)	1 (1.4%)	1 (1.4%)	32 (43.2%)	15 (20.3%)	4 (5.4%)	0 (0.0%)	11 (14.9%)
규모	5인 미만	7 (4.8%)	6 (4.1%)	1 (.7%)	5 (3.4%)	64 (44.1%)	35 (24.1%)	8 (5.5%)	-	19 (13.1%)
	5인 이상	5 (8.6%)	3 (5.2%)	1 (1.7%)	1 (1.7%)	20 (34.5%)	16 (27.6%)	6 (10.3%)	-	6 (10.3%)

○ 코로나 19로 인해 점포의 매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한 결과 조사 참여 점포의 82.0%인 210개소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7]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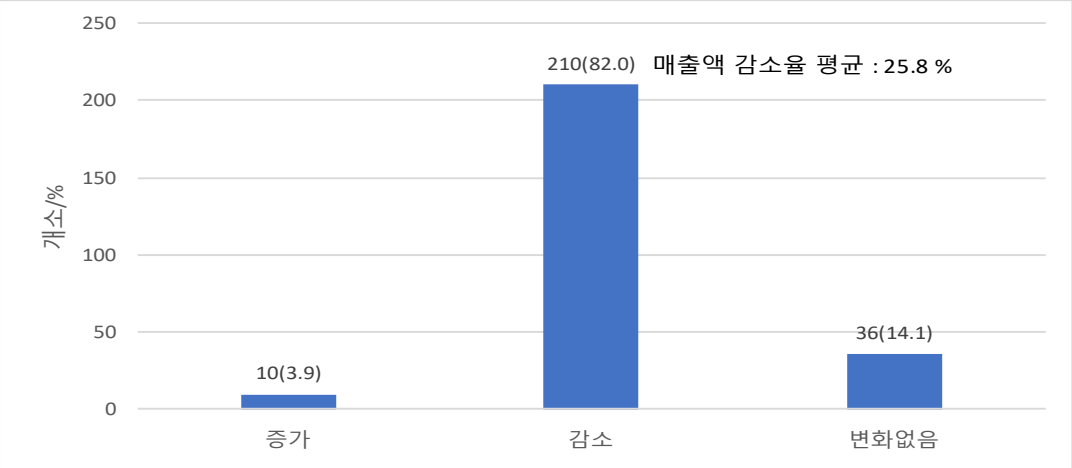

* 괄호안 수치는 비율치임.

- 매출액 감소율 평균은 25.8%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전과 대비해 1/4 가량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다.
- 주요변수별 매출 감소 현황을 보면, 점포 개설 이력이 짧을수록 감소율이 높은 편이며, 규모에서는 5인 미만에서 약간 높은 편이다.
- 가맹형태에서는 직영점의 매출 감소율이 위탁·순수 가맹점보다 월등히 높다. 대체로 직영점의 경우, 상권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표 2-28] 주요 변수별 매출 감소율

구분		감소율(%)	구분		감소율(%)
점포 이력	1년미만	28.8	규모	5인미만	26.2
	3년미만	27.0		5인이상	23.7
	5년미만	23.7	소유	자가소유	19.4
	10년미만	25.0		월세	24.7
	10년이상	23.4		전세	43.8
가맹 형태	위탁가맹점	28.1		보증부월세	23.0
	순수가맹점	23.1		기타	28.9
	직영점	48.8			

○ 코로나 19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파악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직원 수 감소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대응한 것이다.

[표 2-29]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방식

구분	1순위		2순위	
	점포 수	비율(%)	점포 수	비율(%)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4	1.9	2	1.3
본사의 간접비 지원	6	2.8	3	1.9
무인,셀프서비스 확대	3	1.4	2	1.3
영업시간 조정	8	3.8	5	3.2
직원 수 감소	96	45.5	19	12.3
직원 근무시간 감소	49	23.2	78	50.6
정부 지원책 활용	9	4.3	22	14.3
제품 가격 인상	-	-	-	-
기타	36	17.1	23	14.9
전체	211	100.0	154	100.0

- 세부 변수별로 보면 5년 이상된 상대적으로 오래된 점포에서 인원 감축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정적인 운영을 해 오던 상대적으로 오래된 점포를 중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상의 위기를 인원 감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최저임금 인상시와 달리 코로나 19 시기 본사 차원에서의 지원(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간접비 지원 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표 2-30] 세부 변수별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방식

구분		매출이익 분배율 조정	본사의 간접비 지원	무인,셀프서비스 확대	영업시간 조정	직원 수 감소	직원 근무시간 감소	정부 지원책 활용	기타
점포 이력	1년미만	0 (0.0%)	0 (0.0%)	0 (0.0%)	0 (0.0%)	11 (45.8%)	7 (29.2%)	1 (4.2%)	5 (20.8%)
	3년미만	1 (1.3%)	3 (3.9%)	1 (1.3%)	0 (0.0%)	36 (46.8%)	19 (24.7%)	4 (5.2%)	13 (16.9%)
	5년미만	2 (5.1%)	0 (0.0%)	1 (2.6%)	2 (5.1%)	10 (25.6%)	12 (30.8%)	2 (5.1%)	10 (25.6%)
	10년미만	0 (0.0%)	2 (6.1%)	1 (3.0%)	3 (9.1%)	18 (54.5%)	5 (15.2%)	2 (6.1%)	2 (6.1%)
	10년이상	0 (0.0%)	0 (0.0%)	0 (0.0%)	2 (9.5%)	13 (61.9%)	4 (19.0%)	0 (0.0%)	2 (9.5%)
가맹형태	위탁가맹점	3 (2.8%)	2 (1.9%)	1 (.9%)	4 (3.8%)	47 (44.3%)	28 (26.4%)	4 (3.8%)	17 (16.0%)
	순수가맹점	1 (1.0%)	3 (3.1%)	2 (2.1%)	3 (3.1%)	44 (45.8%)	21 (21.9%)	4 (4.2%)	18 (18.8%)
	직영점	0 (0.0%)	0 (0.0%)	0 (0.0%)	1 (33.3%)	2 (66.7%)	0 (0.0%)	0 (0.0%)	0 (0.0%)
규모	5인미만	3 (2.3%)	6 (4.6%)	2 (1.5%)	3 (2.3%)	61 (46.6%)	31 (23.7%)	7 (5.3%)	18 (13.7%)
	5인이상	0 (0.0%)	0 (0.0%)	0 (0.0%)	2 (4.4%)	19 (42.2%)	13 (28.9%)	2 (4.4%)	9 (20.0%)
소유 형태	자가소유	0 (0.0%)	1 (9.1%)	1 (9.1%)	0 (0.0%)	2 (18.2%)	3 (27.3%)	0 (0.0%)	4 (36.4%)
	월세	2 (2.1%)	4 (4.2%)	1 (1.0%)	1 (1.0%)	49 (51.0%)	26 (27.1%)	2 (2.1%)	11 (11.5%)
	전세	0 (0.0%)	0 (0.0%)	0 (0.0%)	1 (16.7%)	2 (33.3%)	1 (16.7%)	0 (0.0%)	2 (33.3%)
	보증부월세	0 (0.0%)	1 (3.6%)	0 (0.0%)	3 (10.7%)	10 (35.7%)	6 (21.4%)	3 (10.7%)	5 (17.9%)
	기타	2 (3.0%)	0 (0.0%)	1 (1.5%)	3 (4.5%)	32 (47.8%)	13 (19.4%)	3 (4.5%)	13 (19.4%)

3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부천지역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 평균 3.2일을 일하고 있으며, 주당 22.7시간을 일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3%, 미교부 비율은 27.0%에 이르고 있다. 조사 참여자 10명중 3명 꼴로 자신의 임금,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 문서를 갖고 있지 못한 셈이다. 이는 특히 여성, 20세 미만의 청소년층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으로 평균 8,478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낮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자가 100명(15.7%)에 이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저임금 미만자 100명중 여성이 60명(60.0%), 만 25세 미만자가 65명(65.0%)에 이르고 있다.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조사 참여자 335명중 201명(60.0%)은 당연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성희롱 유경험자 50명중 46명이 여성이며, 폭언·폭력 유경험자 158명중 91명(57.6%)이 여성이다.

○ 전반적으로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인 여성, 20대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시장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 최저임금, 주휴, 인격적 대우 등 모든 항목에서 여성, 20대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는 비단 부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서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내 단시간 노동자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우선적으로는 진행하고 있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지속·확대가 필요하다.

- 집단적 이해대변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외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 이런 점에서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지속과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권익서포터즈의 인원을 확충하고, 아울러 대상 또한 편의점에서 타 프랜차이즈 업태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사업 내용 또한 단시간 노동자 대상에서 편의점 점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는 1인 자영업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법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부천시 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를 배경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특히 단시간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여성, 준고령 노동자 등 노동시장내 취약 계층 노동자가 주로 취업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종합적으로 보장·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기적으로는 지역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가이드 라인을 작성해 앞서 언급한 노동권익서포터즈 활동과 결합해 단시간 노동을 집중 활용하는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교육이 필요하다.